

기관

부근의 가정폭력 피해자 옹호 기관을 조회하려면 아래의 무료 가정폭력 핫라인으로 전화하십시오.

워싱턴주 핫라인

V/TTY 800-562-6025

전국 핫라인

800-799-SAFE (7233)
TDD 800-787-3224

CLEAR(무료 법률 상담)

888-201-1014

그 외는 아래 번호로 전화하십시오.

2-1-1

Web 사이트

다음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DCS로 전화하십시오.

법률 상담 및 정보

www.washingtonlawhelp.org

www.courts.wa.gov/

아동양육비 담당 부서

childsupportonline.wa.gov

DCS 이메일

DCS-CRU@dshs.wa.gov

아동양육비 서비스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집 부근의 **DCS** 사무실이나 **800-442-KIDS(5437)**로 전화하십시오.

DCS 사무실

Everett	800-729-7580 425-438-4800
Fife	866-243-4449 253-922-0454
Kennewick	800-345-9981 509-374-2000
Olympia	800-345-9964 360-664-6900
Seattle	800-526-8658 206-341-7000
Spokane	800-345-9982 509-363-5000
Tacoma	800-345-9976 253-597-3700
Vancouver	800-345-9984 360-696-6100
Wenatchee	800-535-1113 509-886-6800
Yakima	800-441-0859 509-249-6000
본부	800-457-6202 360-664-5000

가정폭력
피해자로서의
아동양육비
수령 방법

아동양육비로
인해 보복이나
괴롭힘 혹은
위협을 당할지
몰라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인 배우자(파트너)를 떠나기란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집을 떠나면 충분치 않은 돈으로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걱정이 되어 그러한 결정을 하기가 무척 힘들 수가 있습니다. 어쩔 곧 바로 아동양육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동양육비담당부서(DCS), 800-457-6202로 전화하십시오.

아동양육비란 부부가 같이 살지 않을 경우 한 쪽 부/모가 아이 양육에 드는 양육비를 상대 부/모에게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소에 있거나 임시 거주지에 있는 동안 또는 접근 금지 명령서가 있는 경우에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국에서 취하는 조치가 귀하나 귀하의 가족을 위협에 처하게 할 수 있다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케이스를 가정폭력피해자로 표시를 해 놓을 수 있습니다. 당국은 이 표시를 보고 귀하에 관한 정보를 다른 주정부 기관에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표시는 또한 업무처리시 귀하의 상황에 대해 주의를 요하도록 합니다.

귀하나 귀하의 자녀가 TANF를 수혜하고 있을 경우 공공지원 콜센터, 877-980-9180으로 전화하십시오.

상대 부/모로부터 아동양육비를 받을 경우 본인이 두려워하는 문제들을 귀하의 케이스 담당자에게 말하십시오.

- DCS에 협조할 경우 귀하나 귀하의 자녀가 어떤 위협에 처하게 될 경우 아동양육비 징수 업무를 위해 DCS에 협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국은 이러한 경우를 “합당한 이유가 있는 클레임”이라고 부릅니다.

- 수혜자격이 있을 경우 사회복지(웰페어) 사무실에서 DCS로 하여금 아동양육비 징수 조치를 모두 중단하게 하고 또는 귀하의 협조 없이 귀하의 케이스를 처리하는 것을 중단시킵니다.
- 수혜 자격이 없을 경우에는 공정심의회를 신청하십시오.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기타 조치:

- 보호명령서가 있을 경우 사본을 보낼 수 있습니다.
- 위협이나 실제 상황을 신고할 수 있는 가정폭력신고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주소로 서신을 보내십시오.

**Division of Child Support
PO Box 11520
Tacoma, WA 98411**

- **아동양육비를 징수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아동양육비를 징수하면 귀하나 귀하의 가족이 위협에 처하게 될 경우 당국은 아동양육비 징수 업무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상대 부/모가 워싱턴 주정부에 아동양육비를체납하였을 경우에는 현 아동양육비 징수 업무가 중단되어도 체납된 아동양육비는 계속 징수될 것입니다.

- **협의위원회(Conference Board)에 연락하여** 주정부에 체납한 아동양육비를 징수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협의위원회는 귀하로 하여금 당국에 양육비 징수 업무를 중단해야 할 이유를 설명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DCS에서 아동양육비 징수일을 중단하여도 상대 부/모의 양육비 지급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아동양육비 명령서가 존재하는 한 비양육권측 부/모의 양육비 지급 의무는 지속됩니다.

- **제때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는 부채로써** 시간이 지나면 큰 금액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 큰 부채금에 대한 징수는 앞으로 귀하의 안전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추가 조치

911로 전화하십시오.

경찰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집을 나왔다가 옷이나 기타 귀중품을 가지러 다시 들어 가야 할 경우 경찰에게 대동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24시간 이용 가능한 가정폭력 핫라인, 800-562-6025로 전화하십시오.

전화 수신자는 귀하의 안전 계획에 도움이 되는 카운티 프로그램으로 귀하를 의뢰하고 다음을 수행할 것입니다.

- 지역에서 기밀이 보장되는 보호소를 찾아 줍니다.
- 숙련된 가정폭력 피해자 옹호자가 상담을 제공합니다.
- 귀하의 가족을 돕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연결시켜 줍니다.

포켓용 안전 계획 팜플렛(DSHS 22-276)을 주문하려면 360-586-6360 혹은 800-865-7801로 전화하십시오.
또는 인쇄부 웹사이트, <https://fortress.wa.gov/prt/printwa/wsprt> 를 방문하십시오.